



쿠오바디스, 인터넷



남승균 소장
대전/충북사무소

요즘 사람들은 신문을 구입하기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한다.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언론사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언론사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다. 언론사들은 배포의 수단으로는 물론 취재에도 SNS를 활용하며, 기자들은 블로그를 통해 기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나름의 소회를 밝히기도 한다. 그런데 언론피해구제의 측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학교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논란을 다룬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이 들어왔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과 함께 학교폭력처리 가이드북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학교장의 발언이 인용된 기사였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가족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학교장의 발언과 달리 사건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의 심리에서 피해 학생 가족의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지면을 통해 가족 측의 반론을 보도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

그런데 반론보도와 기사삭제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조정신청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이 여전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언론사의 협조로 며칠 후 기사의 '찌꺼기'까지 삭제되었지만,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악몽 속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또다시 견뎌야 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방문했을 때 원래 제공되는 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한 회사의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금지 및 예방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기업이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구축한 '네이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얻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맥락에서 생각해보자.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그들에 대한 정보가 포털에서 '검색됨'에 동의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거대 포털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웹 3.0을 말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빅데이터라는 거시적인 세계는 결국 개인이라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난 시간의 총합이다. 인터넷이라는 산업이 이렇게 구축된 가치를 이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해소나 개인정보침해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기업의 리스크 정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포털사에 메일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연락할 방법조차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디지털 시대의 현실이다.

구글 검색결과에 나타난 링크 삭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만큼이나 언론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 '언론'만 한정해서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 조치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언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프랙털 구조의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윤리적인 논의가 없다면 이런 피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자식에 대한 기사가 웹사이트에 떠다니면서 세간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발전의 논리만으로 가릴 상황은 아니다. 그것이 내일 당장 내 일이 되지 않으리라 누구인들 장담할 수 있을까.

